

제413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2월23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26423)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34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8)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1)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6)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7)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1)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8)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95)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6)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9)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7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2)
-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김정호 의원 등 71인 발의)(의안번호 2126176)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26423)	4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4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2)	4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3)	4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8)	4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7)	4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345)	4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6)	4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8)	4
1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1)	4
1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6)	4
1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7)	4
1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1)	4
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8)	4
1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95)	4
1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	4
2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6)	4
21.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9)	4
2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6)	4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79)	4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1) ...	5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6) ...	5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2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	5
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	5
30.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김정호 의원 등 71인 발의)(의안번호 2126176)	7
1.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26423)	12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12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2)	1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3)	12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8)	12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7)	12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345)	12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6)	12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1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8)	12
1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1)	12
1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6)	12
1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7)	12

1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1)	13
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8)	13
1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95)	13
1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1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	13
2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6)	13
21.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9)	13
2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6)	13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79)	13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1) ...	13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6) ...	13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2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	13
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	13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훈 예,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의사 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지난 21일 날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했던 연장선상으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2월 14일 날 발의했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알고 계실 겁니다. 접경지역, 인구 50만이 넘는 지역의 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이고요.

그동안 접경지역인 김포와 파주 등 군사보호지역 그리고 그린벨트 등 많은 규제로 불이익을 받았었고 정부 주도의 신도시 건설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우리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어 현재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포골드라인이 ‘골병라인’으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혼잡도가 290%에 육박하는데 이틀에 한 번 꼴로 기절, 실신, 호흡곤란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김포·검단 시민들의 숙원사업

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1일 경제재정소위 당시 본위원의 질의에 김병환 1차관께서 김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예타 면제를 포함하여 가장 빠른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김주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참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정부는 김포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관련 대책과 사업들을 신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서는 예타 면제를 포함하여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김포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김포 라인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측에서도 현재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김주영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잘 좀 헤아려서 신속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29항의 안건은 김주영 위원님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마는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오늘 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보증동의안과 법률안을 의결하고 결의안을 새로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26423)

(10시13분)

○위원장 김상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공급방법이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5조 원 한도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공급방법에서 동 기금채권의 발행 주체를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중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발행인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관계로 해서 다른 의사일정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8)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7)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345)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6)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8)
1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1)
1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6)
1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7)
1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1)
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8)
1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95)
1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
2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6)
21.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9)
2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6)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79)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1)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6)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2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

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

(10시18분)

○**위원장 김상훈** 의사일정 제2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동수 소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경제재정소위원회 유동수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원안으로, 4건의 법률안은 수정안으로 그리고 16건의 법률안은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에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존속 기한 및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대식·박대출·김선교·박상혁·류성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경미한 계약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금전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 일정을 조정하며 임직원의 직무 사건 외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장에게 수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영석·변재일·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통계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의무와 통계 오류에 대한 수정 및 공표 의무를 신설하고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이용, 통지, 열람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성호·윤영석·양기대·박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에서 25조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서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복권 판매인인 우선계약당사자에 한부도가족지원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국·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경쟁입찰에서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진신고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감면받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상한에 차등을 두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업체의 수출입 거래자료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체계·자구 및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법안 심사에 노력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러나 또 이번에 통계법 관련해서요 저희가 개정안을 냈는데 개정안 중에 일부 통계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또 현장 조건,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현장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나 또 기준을 좀 제대로 정비하자 이렇게 마련한 그 법안은 보류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이제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져서 새롭게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고민해주고 노력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하고 법안을 만들었던 현장조사에 대한 보다 더 근본적인 체계 개선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자구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원안에 나와 있는 통계조사자의 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근무 여건이지요. 같이 노력하겠다라는 것도, 저희도 같이 그런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저희가 이 법을 집행해 나가는 데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저희가 현장조사의 방법, 절차, 준수 사항 이런 법적 근거를,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세우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진적으로,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이 문제들을 노력하시면서 그걸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계조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통계청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요 그런 내용도 같이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결정족수가 한 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심사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의사진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테니까 끝날 때까지 이석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토론 신청했는데요.

○위원장 김상훈 토론 신청하셨어요?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장혜영 위원 녹색정의당 장혜영 위원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수출산업이라고 하는 건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인 거고 국가가 금융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떤 가치나 어떤 사회, 그게 단순히 국내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경제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가를 보여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수출입은행의 주요 투자처를 보면 사실 평화, 녹색 이런 방향보다는 방산, 원전 이런 방향에 훨씬 더 치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수은의 주요 투자처들을 보면 제가 지난 국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소 투자를 한 다라고 하는 명목은 있었지만 사실상 한화그룹 승계하는 데 수출입은행이 돈을 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또 대규모 탄소배출, 원주민들 생활 터

전 잃어버리게 만드는 파괴가 예정되어 있지만 제가 4년 내내 싸웠어도 호주의 바로사 가스전 결국에는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을 했고요. 이집트 정유산업에 돈을 대면서 심지어 그걸 친환경 투자라고 포장을 하기까지 했는데 사실상 세계에서 공적금융으로서는 세 번째로 화석연료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수출입은행입니다. 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군부정권하고 협력해서 하는 인프라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단순히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종류의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출입은행이라고 하는 이 공적금융의 방향성이 적어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거나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서 기후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고민이 우리 정부에는 없는 것인가 그걸 좀 여쭙보고 싶은데요. 경제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동안에 수출입은행의 수출이나 해외 수주 지원은 사실은 저희가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열렸거나 또 새로운 수요자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도 맞춰서 하는 측면도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방산이라든지 또 원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국민 경제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한 것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수출입은행의 지원 여력을 확충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산 산업 이런 것만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이라든지 미래성장산업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녹색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국가의…… 지금 수출입은행이 또 EDCF도 같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 우리 정부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또 어떤 글로벌 이슈에 우리 국가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들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요 앞으로 수출입은행의 수출 지원 그 방향을, 그러니까 정책금융의 지원 방향을 새로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길게 어쨌든 수출입은행의 투자 방향성의 변화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은 인정해주셔서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방산 투자를 하고 석유를 채굴하는데 혹은 가스전에 투자를 하면서 녹색투자를 같이 한다고 하는 건 사실 합치면 0이잖아요. 뭘가를 함으로 인해서 방향성을 선도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향성을 선도하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세계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선도한다면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나서서 세계의 갈등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기를 수출하고 제조하는 산업을 지탱하는 국가이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평화를 만드는 그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김정호 의원 등 71인 발의)(의안번호 2126176)

(10시30분)

○위원장 김상훈 의사일정 제30항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장혜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장혜영 의원 제가 마이크를 오늘 많이 잡네요.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상정된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은 사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정호 의원님 외에 칠십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안입니다. 제가 대표발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기후특위 소속이기도 한 제가 이 안이 얼마나 중요한 안인지를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세계기상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은 174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한 해였고 때때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의 폭이 1.5도를 넘는 날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이 위협받는 일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전 세계 등지에서 기후재난이 잇따랐습니다. 브라질, 태국, 인도 등 대륙을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인 폭염으로 대규모의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했고 아름다운 섬 하와이도 최악의 산불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한편 우루과이에서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염분기가 있는 물을 수도물로 제공해야 할 정도로 극악한 가뭄이 닥쳤고 리비아에서는 역사상 최대의 홍수로 1만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기후재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 피해는 재난 대응역량을 비롯해서 여러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른바 COP28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을 국제적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기후재난 피해에 대해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조성되는 이번 기금에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구체적인 참여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정부는 환영의 입장만을 표했을 뿐 구체적인 기여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로 주요 연구기관들이 밝힌 바와 같이 한국 또한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연간 그리고 누적 배출량은 세계 순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후재난의 책임을 대한민국 역시 응당 나눠 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7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뜻을 모은 이번 기금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바르고 신속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그리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기후재난 피해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동 기금에 응당한 규모의 기부금으로 이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동 기금에 출연을 표명한 국가의 조성 규모로는 기후 피해에 따른 지원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금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추후 이뤄질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 및 타국의 표명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혜영 위원님.

○장혜영 위원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경제부총리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손실과 피해 기금 공여에 대한 이 결의안이 지금 채택이 된 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의 이 정신을 존중해서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해외 ODA 같은 것은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ODA 내용 중에는 결국은 이런 글로벌 이슈들, 특히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 정부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기여를 한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COP28에서 합의된 이 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본 결론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어떠한 나라들이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재정 여건이나 다른 나라의 공여 상황 등 그다음에 또 기금의 운용 방향이 좀 구체화되는 것을 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여 여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논의가 구체화되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혜영 위원 사실 정부 측에서 COP28에서 이 기금이 결정되고 곧바로 원론적인 환영 입장이 나왔다는 것은 이 기금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이런 결의안이 나온다는 것의 의미를 헤아려 주시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미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도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장혜영 위원 결국에는 대한민국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다른 나라들의 기여를 통해서 이만큼 성장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런 방식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한민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먼저 결정할 때 같은 공여를 하더라도 훨씬 더 의미 있는 공여를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장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예, 의사진행발언.

○윤영덕 위원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정말 절박한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내는,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결의로 시작을 해서 이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재위 전체회의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민망합니다. 국민들 뵈기가 송구스럽습니다. 법안을 의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엇그제 여당 원내대표인 윤재옥 대표님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21대 국회가 법안 발의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 통과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책임 있는 여당 위원들, 그리고 오늘 처리되는 법안을 보니까 대표발의한 의원들 중 우리 기재위 위원들조차도 이렇게 출석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은 정말 국민들 뵈기에 민망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야 양당 간사님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그런 권한을 이렇게 허술하게 생각하는, 특히 집권여당 대표발의한 의원님들, 이걸 정말 자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님 비롯해서 존경하는 양당 간사님께서 좀 서둘러 주셔 가지고, 오늘 특히 정부에서 그토록 원했던 수은법 개정안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당부터 책임 있게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유감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 시급히 의사정족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훈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성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 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논의되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여당 간사로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재정경제소위였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좀 길게 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3분 정해져 있는데……

재정경제소위였고요. 지금 류성걸 간사님 말씀하는 걸 보니까, 사실 비판 세계 하려고 그랬는데…… 류성걸, 서영교 그리고 또 유동수, 박대출, 김주영, 양기대, 이수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때도 국힘에서는 2명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명 나왔습니다, 2명. 저희가 다 나와서 1명도 안 빠트리고 정족수 채워서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다 같이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법안들은 하나도 제대로 상정을 안 해요. 너무 서운했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많은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침에 그냥 목이 매여서 끌려다니듯이 ‘이것 좀 바꿔 주세요’, ‘ILO가 권고했으니 우리 노동자들도,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전부 다 지침 만들거나 협의하거나 임금 협상하는 데 들어갈 수 있게 법안 좀 해 주세요’, 청원이 지난 번에 몇 만 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법안 한 번도 논의조차 해 본 적이 없어요.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국민의힘당에서 이 제안을 했고, 우리도 당연히 수출입은행 한도를 늘리는 것에 찬성해 왔고…… 그런데 그때도 들 나왔어요. 오늘도 나오질 않아요.

저희도 일이 많습니다. 저도 최고위원이라 지금 당에서 붙잡으면서 이거 마저 하고 가야 된다는데 ‘아니, 10시에 이 회의가 있으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빨리 당장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데 ‘빨리 와서 하겠다’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됩니까? 이쪽도 못 하고 저쪽도 못 하고……

우리가 어제였나요, 법안이? 내내 막혀서 아무 일정도 못 하고, 그러나 그 일들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정부는 이럴 때 국힘당 위원들에게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내일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하면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전화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됩니까?

정부는 뭐 하세요? 그리고 나는, 정부가 전화를 안 해. 최상목 장관께서 전화도 좀 하고 우리한테도 전화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얘기도 하고? 도대체 국회의원을 줄로 보는지 뭇로 보는지……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 이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올 분이 없어요, 저희도 기다릴 시간이 없고.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민주당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에게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야기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까 합니다.

○진선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진선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었습니다.

○진선미 위원 어쨌든 정부 쪽의 참석자를 최소화해서라도, 저희가 본회의가 2시부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 전후에, 아니면 대정부질문 중이니까 그 중간에라도 열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회를 하고.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정부에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 없어요. 많지만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할 건 많지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김주영 위원님, 김포 라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부총리님, 다시 한번 좀……

‘목련 피면 서울 편입된다’는 여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목련이 한 달쯤 뒤면 필 것 같은데 한 달 뒤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됩니까? 정부가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고 지자체 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러면 김포시민만 주민투표 끝내면 서울 편입이 완성이 됩니까? 절차상 서울에서 동의를, 서울시도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뇌주는 경기도에서도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절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게 일단은 지자체 간 통폐합은 법률 제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좀 더……

○**김주영 위원** 그러면 재정 당국의 최고 책임자 시니까 부총리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더 전문가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방세가 2500억 정도 줄어들게 되고 재산세가 750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약 3200억 정도의 김포시의 예산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다른, 더 전문가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기재부2차관입니다.

지방세하고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요. 어차피 재산세도 지방세의 일종이라, 아마 다른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주영 위원** 지금 이거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담뱃세라든지 면허,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여당에서 발의한 특별법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일단 유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14개 분야 42개 항목에서 김포시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서울시로 이관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을 오랫동안 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세금 줄어드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부분은 명확하게 지방세하고 재산세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구체적인 특례나 그리고 지방세 세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서울시가 김포시하고 통합이나 연계되는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다음에 지방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구용역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특별법을 덜컥 내놨는데, 특별법이라는 게 별 거 없습니다. 서울로 편입해서 구로 만드워 그동안의 김포시 권한들을 6년간 유예해 주고

6년 뒤에는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제보다 불이익을 받는 게 확실하게 맞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런데 구체적으로 6년 뒤에 현재 김포시가 누리고 있는 각종 특례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여부는 지금 저희 기재부 차원에서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지방세나 다른 특례 부분은 소관……

○**김주영 위원** 그러나 소관 부처가 행안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걸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었고 또 총선을 앞두고 그냥 급하게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간 좀 더 주시지요.

○**위원장 김상훈** 예, 마무리하시면서 하시지요.

○**김주영 위원** 3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목련 피면 서울에 편입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치의 계절이라 그러더라도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한번 따져 보고 시민들한테도 선택할 권한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거 60일 전부터는 이런 주민투표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김포시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포시 편입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구리, 하남, 광명, 여러 군데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부총리님께서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에도 근무를 하셨고 또 국무회의 위원으로서 국무회의도 참석을 하시니까.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정부 내의 비공식적인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공식적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경우는,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렇다면 5호선 연장 관련해서 지금 가장 빠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면 본 위원은 예타 면제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빠른 방법도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기재부2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설사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철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24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주영 위원 그런데 그냥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일상적으로 철도를 연장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토하는 단계를 떠나서 지금 일반적으로 철도를 건설하는데에는 그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되면 공사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정도로 절박합니다.

그리고 콤팩트시티가 2030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혼잡도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올림픽대로 확장이라든지 올림픽대로 지하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하철 5호선 연장하고는 별도로 올림픽대로에 광역버스를 추가로 투입한다든지 그런 김포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확충 대책은 국토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도로 확장이나 다른 방법이 없이는 차량을 투입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위원장 김상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주영 위원 그래서 꼭 좀 그런 대안들까지…… 철도망과 도로망을 같이 확충하는 걸,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도 10년 뒤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오전 의사진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정부 측 배석자는 최소화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오후에 꼭 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오늘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26423)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3)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8)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7)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345)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6)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8)
1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1)
1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6)
1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7)

1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1)
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8)
1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95)
1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4304)
2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6)
21.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59)
2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6)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079)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81)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26)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2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345)
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97)

○위원장 김상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유재산특별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및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진선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강 준 현	김 상 훈	김 주 영	김 태 년
류 성 결	박 광 온	박 대 출	박 진
배 준 영	서 영 교	양 기 대	유 동 수
윤 영 덕	장 혜 영	정 태 호	진 선 미
한 병 도			

○청가 위원(5인)

김 영 선	송 언 석	양 경 숙	윤 영 석
조 해 진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송 주 아
전 문 위 원	이 정 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 총 리 겸 장 관	최 상 목
제 1 차 관	김 병 환
제 2 차 관	김 윤 상
차 관 보	홍 두 선
국제경제관리관	최 지 영
재 정 관 리 관	김 언 성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진 명
국 고 국 장	임 형 철
공 공 정 책 국 장	강 영 규
대 외 경 제 국 장	민 경 설
개 발 금 융 국 장	김 재 환
정 책 기 획 관	장 문 선
국유재산심의관	윤 석 호
재정건전성심의관	최 한 경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 단 장	최 재 영
한 국 수 출 입 은 행	
공급망안정화기금준비단 장	이 동 훈

【보고사항】

○의안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

(2024. 2. 16. 박진·구자근·김은희·윤상현·김형동·김근태·권성동·류성결·김미애·이인선·양금희·김상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

(2024. 2. 16. 박진·구자근·김은희·윤상현·김형동·김근태·권성동·류성결·김미애·이인선·양금희·김상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

(2024. 2. 19. 박대출 · 윤영석 · 이용호 · 윤한홍 · 김용관 · 金炳旭 · 박성민 · 송석준 · 김예지 · 정희용 · 권명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4. 2. 19. 박대출 · 이용호 · 윤한홍 · 김용관 · 金炳旭 · 박성민 · 김예지 · 송석준 · 윤영석 · 정희용 · 권명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0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24. 2. 20. 윤상현 · 박진 · 강대식 · 최재형 · 이현승 · 윤두현 · 정동만 · 김학용 · 이상민 · 이명수 · 성일중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 발의)

(2024. 2. 20. 윤상현 · 박진 · 이현승 · 강대식 · 최재형 · 윤두현 · 정동만 · 김학용 · 이상민 · 이명수 · 성일중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1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4. 2. 21. 유동수 · 김주영 · 윤영덕 · 강준현 · 김경협 · 강병원 · 홍성국 · 최혜영 · 정태호 · 양경숙 · 김태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2024. 2. 21. 김병욱 · 정성호 · 서영석 · 민병덕 · 문진석 · 정일영 · 박성준 · 김한규 · 김태년 · 박찬대 · 이소영 · 황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2일 회부됨